

서울특별시의회  
제320회 임시회

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제 안 설 명



2023. 9.

서울특별시의회

김기덕 의원 (더불어민주당, 마포4)

- 존경하는 박환희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  
안녕하십니까?  
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기덕 의원입니다.
  
- 본 의원이 발의한  
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」에 대하여  
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  
- 본 조례안은 인사청문회 조항과 관련한 사항으로  
현재 국회의 경우 타 법령 등에서 공직 후보자에 대한  
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한 규정에 근거해,  
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는 반면,
  
- 지자체의 경우 지방공기업법이나 지방출자출연법 등에서  
기관장에 대한 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한  
규정이 부재한 실정입니다.
  
- 이에 최근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의 2(인사청문회) 개정으로,  
인사청문회 제도 신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의  
조례 위임에 따라 본 조례상의  
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.

- 이에 안 제56조 제명의 경우  
기존 ‘산하기관장에 대한 검증’에서  
‘인사청문회’ 조항으로 제명을 개정하였으며,
  
- 안 제1항의 경우,  
기존 산하기관장에 대한 검증에만  
국한되었던 조항을  
개정된 법령에 근거하여,  
안 제1호에서 3호의 인사청문회 주체를  
부시장, 지방공단의 이사장,  
출자·출연기관의 기관장으로 확대하며,
  
- 안 제2항의 경우,  
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 
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사항은  
「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」에서  
정하는 바에 의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.
  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 
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 
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 
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 
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